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연종석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7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7월 3일

3. 제안이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장애보상 규정을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로 개정(안 제21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현행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1조에

다른 정원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도내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므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19. 7. 1.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을 위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6조의2는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원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규칙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규 칙	개 정 안
시·도 : 60명 이내	시·읍 :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50명 이내
시·읍 : 60명 이내	면지역 : 혼성대·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
면 : 50명 이내	전담·전문의용소방대 : 30명 이내
시·읍·면 지역 의용소방대 : 50명 이내	본대 소속 지역대 : 20명 이내
전문의용소방대 : 50명 이내	

현재 13개 시·도에서(부산·인천·대전·경남 제외)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정원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안 제21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됨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 근무 중 장애를 입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적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입법예고('19. 6. 25.~'19. 6. 3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도내 여건을 감안하여 의용소방대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적법한 장애보상을 위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 개정으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정원이 5,260명에서 200여명이 증가하고 연 1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원된 정원의 운영 계획과 예산 편성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